

# 해외 출장 결과 보고서

출장명 : 미국 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제도(TAAF) 현황 조사

## 1. 출장 목적

- 미국의 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제도(TAAF)의 현황 및 운영체계 조사
  - 미국의 농업무역조정지원제도의 운영기관인 FAS(해외농업청), ERS(경제연구소)의 방문을 통해 TAAF 운영 현황조사 및 시사점 도출
  - 무역개방화로 인한 해외 농산물 수입증가가 미국 농산물 품목 가격하락에 중요하게 기여했는지 여부의 분석 방법 조사
- 관련 기관(FAS, ERS)방문 및 희망농업포럼을 통해 농업분야 무역조정제도(TAAF)의 국내 도입가능성에 대해 고찰하고 향후 FTA 이행지원센터의 역할 및 나아가야할 방안 모색
  - 미국 현지조사를 통해 미국의 TAAF를 우리나라의 FTA 피해대책(피해보전직불제, 폐업지원금)의 개선방안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을 살펴보고 FTA에 의한 피해분석방법 및 그에 따른 FTA 이행지원센터의 역할 연구

## 2. 출장 목적 세부 내용

- 같은(like) 품목이 아닌 “직접적으로 경쟁하는 품목”(directly competitive commodity)의 수입 증가로 상품 인증 요건을 충족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
  - 특정 품목이 “직접적으로 경쟁하는 품목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
- 신청 품목의 가격 하락에 수입증가가 중요하게 기여(contributed importantly)했는지 여부의 분석 방법(사례)
  - 구체적으로 어떤 수치를 이용하는지 여부 및 경제학적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면 그 분석방법 조사
  - 여러 가격(또는 생산량, 생산액) 변동요인(수입, 수출, 생산, 소비자 기호변

화, 기상, 질병 등)중 피해(청원)품목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분석 방법 및 기법 조사 필요

- 상품 인증 신청을 했던 품목 중 거절되었던 품목의 사례 및 거절 사유
  - 수입 증가 및 가격 하락 요건을 충족했으나, 그 수입의 증가가 가격의 하락에 중요하게 기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거절되었던 사례가 있는지 여부
  - 상품 인증 신청이 거절된 생산자집단의 다른 구제방법의 존재 여부 및 그 방법, 사례
- 신청심의위원회(Petition Review Committee)의 구성원 및 심의 내용
  - 상품 인증 여부가 이 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되는지 여부 등
- 2011년 연장법(Trade Adjustment Assistance Extension Act of 2011)으로 농업 TAA가 2014년 12월까지 연장된 이후 TAA 운영 현황 및 향후 제도 운영 계획
  - 2013 무역조정지원연장법, 2014 무역조정지원연장법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. 2014년 이후 현재 운영 현황
- 과거 현금 보조금 지급(피해보상)방법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강화(수입경쟁력)로 개선
  - 수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기기술지원과 집중기술훈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
- 그 외 기타 질문 사항
  - TAAF제도 외에 농산물의 수입 증가에 따른 농업분야 지원제도 사례
  - 농업 TAA 제도의 정책 효과성에 대한 연구·분석 자료 여부
  - 제도에 대한 농업인의 불만사항 및 건의사항, 반영 여부

### 3. 출장자 · 출장기간 및 출장지

- 출장기간 : 2015년 2월 9일(월) ~ 2월 13일(금)

○ 출장지역 : 미국, 워싱턴 D.C.

○ 출장자 : 한석호, 이수환

소속	출장자	직위	출장기간	출장지
FTA이행 지원센터	한석호	연구위원	2월 9일(월) ~13일(금) (3박 5일)	미국
	이수환	초청연구원		

#### 4. 주요 방문기관 및 조사내용

기관명	소재지	조사 내용
해외농업지원청(FAS; Foreign Agricultural Service)	Washington D.C.	무역조정지원제도 프로그램 운영체계 현금 보조금 지급제도 및 운영체계 조사
경제연구소(ERS; Economic Research Service)	Washington D.C.	농산물 가격변동요인에 대한 분석방법 조사

#### 5. 출장일정

날짜(숙박)	이동	일정 및 면담
2월 9일(월) 1일차(워싱턴 D.C.)	인천→미국 워싱턴 DC	현지도착
2월 10일(화) 2일차(워싱턴 D.C.)	워싱턴 D.C.	미국 농무부(USDA) 해외농업지원청 (FAS; Foreign Agricultural Service) 방문 (1400 Independence Avenue Southwest #5071 Washington, DC 20250, United States - 무역조정제도 및 수출정책 담당자
2월 11일(수) 3일차(워싱턴 D.C.)	워싱턴 D.C.	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연구소(ERS; Economic Research Service) 방문 (Economic Research Service, 355 E Street SW, Washington, DC, 20024-3221 USA
2월 12일(목) 2월 13일(금)	워싱턴 D.C.→인천	한국도착

## 6. 출장결과

### 6.1 해외 농업지원청(FAS)

출장 날짜: 2014년 2월 10일 15:00~18:00

출장 장소: 미 농무부(USDA) 해외 농업지원청(FAS)

출장 결과:

미국 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제도 현황 및 운영체계

ARRA 개정 이후 미국의 농업분야 무역조정지원제도(TAAF) 현황

- ARRA: 미국 경제회생 및 재투자법(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2009)
- 무역자유화로 인해 해외 농·수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국산 가격 및 소득이 감소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상품개발, 신규시장 개척, 대안적 기술 및 재취업 직업훈련 등 개방화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
- 2009~10년까지 농어업 TAAF 예산은 매년 9천만 달러 (2011년 1/4분기: 2,250만 달러)
- 2011년부터 2014년 1/4분기까지 TAAF는 연장되었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더 이상 청원 접수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11년 1/4분기까지 청원이 수용되었던 품목에 한해 지원
-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)이나 추가 자유무역협정(FTA)에 의한 피해 대책 방안으로 TAAF 제도를 다시 시행할 가능성이 높음

ARRA 개정 후 미국 농업 무역지원 조정제도(TAAF) 운영체계



- 해외 농업지원청(FAS)는 TAAF제도 시행총괄 및 청원서 검토
- 경제연구소(ERS)는 청원신청 품목 검토를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한 시장 조사
- 신청심의위원회(PRC)에서는 ERS조사 결과 및 신청서류 검토 후 심의하여 해외 농업청에 의견을 냄
  - ※ 신청심의 위원회 구성(총 4명): Representatives of The office of the Chief Economist(USDA), The Farm Service Agency(FSA), The Agriculture Marketing Service(AMS), and FAS
- 국립 농식품원(NIFA)에서는 품목해당 지원자의 초기기술지원 및 집중 기술지원 총괄

○ 개정 후 미국의 농업분야 TAAF 대상품목 및 지원요건

- (대상품목 확대) 기존 TAAF 제도는 신선농산물이 대상 이었으나, 개정 이후 농산물 및 수산물에 속하는 모든 상품(원료 또는 천연상태 상품 및 그에 해당되는 가공품 포함)들로 확대

※ 대상품목은 HS코드 1, 3~8, 10, 12, 14, 23, 24, 41, 51, 52 기준

※ 예를 들어, 사과와 사과주스, 사과소스, 사과잼 등 가공품을 모두 포함. 단 소비대체 등 기타 간접피해는 제외

○ (지원 절차) 생산자 그룹이 신청한 탄원서가 TAAF 지원 품목으로 판정되면, 해당 품목의 개별생산자들이 품목인증 후 90일 이내(첫 번째 신청기간: 3월 11일~4월 14일, 두 번째 신청기간: 5월 21일~7월 16일) 각 지역의 FAS 지사에 혜택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

- 생산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은 생산자와 함께 수입에 의해 피해(Risk)를 본다는 가정 하에 개별 생산자로 간주하여 증명서류나 연령제한 없이 지원신청 가능함
- 생산자가 고용한 직원들의 경우, 수입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증명서를 제시하면 개별생산자처럼 신청이 가능

○ (신청자격요건)신청자는 품목이 발동되기 이전의 3년간의 유통년도 기간 중 적어도 1년 이상 발동품목을 생산함을 증명

- 개정된 TAAF에는 작년대비 순농업소득 감소에 대한 증명 제외되었음
  - (개정 전) 조정총소득(Total Adjusted Gross Income)이 25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는 TAAF 신청자격 상실
  - (개정 후) 과거 3년 동안의 조정총소득(유통연도기준)이 농업소득으로 75만 달러, 비농업소득으로 5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TAAF 자격 상실
  - 해당품목의 생산량(유통연도 기준)이 발동되기 전 가장 최근 유통연도의 생산량에 비해 감소하였거나 해당 품목의 가격이 최근 3년의 유통연도 기간 동안의 생산자 판매가격 또는 그 지역의 평균가격보다 낮음을 증명
  - 근로자 TAA, 기업 TAA, 타품목의 농어민 TAAF로부터 혜택을 받지 않았음을 증명
- TAAF지원에 해당되는 농어민은 해외농업지원청(FAS)로부터 ①현금 보조금 지급과 ②기술지원을 받고 또한 근로자 무역조정지원제도에서처럼 ③교육훈련 참여지원
- 기술지원에 포함되는 대체작물 및 새로운 상품 개발, 마케팅 기법전수 등은 무상으로 지원
- 지원 적격 대상자는 교육 훈련으로 ①초기(Initial) 오리엔테이션 훈련 및 ②집중(Intensive) 기술지원을 제공 받은 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음
- 미네소타주립대의 농장 재정 경영 센터에서 지역 기술교육을 운영 및 관리를 담당
  - 사업계획서 검토 및 재정지원금 등 대부분의 교육은 각 지역의 국립 농식품원(National Institute of Food & Agriculture; NIFA)의 전문가가 담당
- 초기오리엔테이션(2~4시간)에서는 TAAF의 교육 훈련 및 재정지원의 전반적인 설명, 지원 품목의 세계시장 상황에 대한 토론, 그리고 품목의 생산성 향상, 유통 개선, 생산 대체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적절성 정보 제공
- 초기 오리엔테이션 가까운 지역에 직접 방문 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 오리엔테이션 참여 가능

※ 90일 이내에 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해야 하며 필요시 소요되는 여행경비 등은 요청에 의해 지원가능

- 집중 기술지원(최소 12시간 이하의 온·오프라인 워크샵 참여)은 초기 오리엔테이션을 완료한 농업인의 경쟁력 및 수익 강화를 위한 「교육」과 그 교육을 기초로 한 초기 사업계획 설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워크샵으로 구성

※ 초기 오리엔테이션 수료 후 집중기술지원에 참여 할 수 있음

- 재정지원은 ③초기 사업계획(Initial business plan)과 ④장기 사업조정계획(Long term business adjustment plan)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음
- 초기 사업계획은 교육훈련을 통해 생산자가 습득한 기술을 자신의 경영 환경에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를 근거해 해외농업청(FAS)이 초기 사업 계획의 승인여부 결정
  - 초기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이를 이행하고 장기 사업조정계획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대 4,000달러를 지급
- 장기 사업조정계획은 농업인의 초기 사업계획이 시장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체 할 수 있는지를 해외 농업청(FAS)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최대 8,000달러 추가 지원
- TAAF 재정 지원은 품목 발동이후 3년 동안 최대 12,000달러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단, 2009년 새로 개정된 무역조정지원법(2009년~2011년 1/4분기)에 따라 일생에 단 한번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음

## 6.2 경제 연구소(FAS)

출장 날짜: 2014년 2월 11일 15:00~18:00

출장 장소: 미 농무부(USDA) 경제 연구소(ERS)

출장 결과:

- (TAAF지원 혜택을 위한) 청원 신청품목의 가격하락 요인 분석방법 조사
  
- TAAF제도는 무역자유화로 인해 해외 농·수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국산 가격 및 소득이 감소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상품개발, 신규 시장 개척, 대안적 기술 및 재취업 직업훈련 등 개방화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
  
- 경제연구소(ERS)는 시장조사를 통해 품목가격변동을 파악하고 가격 변동 요인들 중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품목의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중요하게 기인했는지를 분석
  - 당해 유통연도의 전국 평균 가격(또는 생산량, 생산액, 판매액)이 과거 유통연도 3개년 평균치에 비해 15% 이상 하락하고,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의 수입량이 이전 유통연도 3개년 평균 수입량과 비교하여 증가 하여함
  - 수입의 증가가 당해 유통연도 전국 평균가격(또는 생산량, 생산액, 판매액등의)감소에 중요하게 기여(Contributed importantly)해야 함
    - ※ 기여의 중요성은 농무부 장관이 40일 내에 최종 결정
  - 품목 가격 변동요인은 수입, 수출, 생산, 소비자 기호변화, 기상, 질병 등을 고려하되, 우선적으로 가장 최근의 유통연도(Marketing year)의 품목 가격이 과거 5개년 유통연도의 평균가격보다 20%이상 하락하고, 수입량은 증가해야 함
  
- 경제연구소(ERS)는 품목 가격하락의 변동성 분석에 있어서 특별한 분석모형을 사용하지 않으며, 과거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가격 및 수입 데이터의 5개년 평균값과 해당연도의 데이터와 정성적 평가를 PRC에 제

출함

- 필요시, 해외농업청의 TAAF 담당자와 탄원 신청자와의 미팅을 통해, 수입으로 피해를 본 품목의 시장 상황과 수입 증가로 인한 청원자의 피해정도 등 청원자의 여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
## 7. 출장사진

